

의안번호	2219765
의 퇴 인	배준영 의원
회 답 일	2026.7.13.
추계번호	26F326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1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1조의28(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)	○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 또는 자산양도대금을 증여하는 경우, 수증법인은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, 증여한 법인 주주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손금산입, 자산양도대금을 증여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100% 감면하는 특례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→ (개정안) 2027.12.31.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21조의28(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)	제1호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(제도개요) 동 제도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 또는 자산양도대금을 증여하는 경우,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것임

- 수증법인: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(제121조의28 제1항)
- 증여한 법인 주주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손금산입(제121조의28 제2항)
- 자산양도대금을 증여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100% 감면(제121조의28 제3항)

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→ (개정안) 2027.12.31.

□ 「조세지출예산서」에 따른 동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

제도 신설 이래 동 제도에 따른 감면 실적은 없는 것으로 집계

- 분할납부 및 세금의 납부시점을 연기해주는 과세이연 제도 특성상 감면실적이 적거나 세입 효과의 추적이 어려움

[표 1]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 감면실적: 2020~2025년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	2025(전망)
조세지출 실적	0	0	0	0	0	0

자료: 대한민국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

- 이에 조세지출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시 개정안에 따른 세입 감소 효과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으로 보여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 대상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김주현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주현	02-6788-4836	kjh@assembly.go.kr